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## 수정안

의안 번호	23-112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28.

발의자 :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상위법령의 정확한 기재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내용

제2조제1호 중 “「헌법」”을 “「대한민국헌법」”으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헌법」”을 “「대한민국헌법」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인권”이란 「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“인권”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